

의정정보 2012-4호

1. 최근 제·개정 법령	3
2.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3
3.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53
4. 선거관련 정보	81
5. 행복한 책임기	86

모 두 보 기

최근 제·개정 법령

- 유아교육법(5)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7)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9)
- 공무원임용령(1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13)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16)
-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24)
- 광주광역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30)
-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37)
- 전라남도 명예감사관 등의 운영 조례(43)
-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48)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 2012 대한민국온천대축제 개최지 충남 아산 선정(55)
- 12월 1일 인감대신 서명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58)
- 12.5월부터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국민연금실비론 시행(60)
- 노후 공공청사 녹색건물로 리모델링 한다(66)
- 한식, 세계 유명 12개국 음식중 7번째(67)
- 고령자, 앞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된다(72)
- 새로운 지역 문화의 메카, 4대강 문화관 개관(75)
- 청각장애학생도 수업을 듣고 질문도 하며, 스마트하게 공부해요(79)

선거관련 정보

-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82)
- 재외선거 주요일정(84)

행복한 책임기

- (86)

최근 제·개정 법령

최근 제·개정 법령

1. 유아교육법	5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9
4. 공무원 임용령	11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6.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13

1 유아교육법

[공포 2012.3.21 시행 2012.3.21]

1. 개정이유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무상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모든 유아로 확대하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반일제, 시간연장제 및 종일제로 구분하던 것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과 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인 “방과후 과정”으로 나누고, 방과후 과정에 대한 정의와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6호, 제12조제2항, 제13조 등).
- 나. 유아의 유치원생활기록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의2 및 제34조제2항제4호 신설).
- 다.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원장 공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교원(敎員) 대표,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 신설).

라. 국립·공립유치원에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회계연도로 하는 유치원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9조의7 및 제19조의8 신설)

마.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에 대한 비용지원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함(안 제24조제1항, 안 제26조제1항·제2항,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및 제34조제1항 삭제).

바. 무상교육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사.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제3항 및 제34조제3항제1호 신설).

아.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및 제35조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 2012.4.10 시행 2012.4.10]

1. 개정이유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에 따라 국고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고 지원 대상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고 지원 대상 및 기준의 조정(안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1)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국고 지원 대상을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

평균액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최근 3년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금액을 평균한 재정력 지수 기준으로 정하도록 함.

2) 국고 지원 여부의 기준이 되는 시·군·자치구별 피해기준 금액을 최근 5년간의 재난복구 비용 산정 단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함.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소액의 피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과 정산 등 국고 지원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군·구는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경미한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안 제8조제3항)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군·자치구의 피해자 및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를 입은 자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공포 2012.3.30 시행 2012.3.31]

1. 제정이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자살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516호, 2011. 3. 30. 공포, 2012. 3. 31. 시행)됨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민간 기관·단체의 범위와 자살예방 상담·교육 실시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안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해의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추진실적의 평가 절차(안 제3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난해의 시행계

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다. 자살실태조사의 실시(안 제4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살 위험요인 등의 사항이 포함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자살 시도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받아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의 위탁(안 제5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앙자살예방센터 또는 지방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을 정신보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자살예방용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안 제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전용회선으로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동안 운영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하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와 연계하도록 함.

바. 자살예방 상담·교육 실시기관의 범위(안 제7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과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병원급 의료기관 및 학교 등을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정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 공무원임용령

[공포 2012.3.30 시행 2012.3.30]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능력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학과성적이 우수한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 후 견습근무를 거쳐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하위 직급 공무원의 고위직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9급에서 3급까지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총 22년에서 16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2012.3.23 시행 2012.3.23]

1. 개정이유

대도시에 비하여 의료자원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에 따라 세분화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안 별표 8)

- 1) 현재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이 해당 지역의 인구규모 및 의료자원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의료자원 등이 대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지정기준 미달로 지정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음.
- 2)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 기준의 50%로 하향 조정함.

나.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안 별표 9)

- 1) 농어촌 지역 주민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중 진료공간 기준을 완화하여 30제곱미터 이상의 진료공간을 확보해야 했던 것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진료공간만 확보하면 되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공포 2012. 3.13 시행 2012.3.16]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시·도 건강가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로 확대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동일·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045호, 2011. 9. 15. 공포, 2012. 3. 16. 시행)됨에 따라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시·도 건강가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건강가정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동일·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타 사·도 제·개정 조례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16
2.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4
3. 광주광역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30
4.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37
5. 전라남도 명예감사관 등의 운영 조례 43
6.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48

1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시민의 안전의식과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고, 선진안전문화를 정착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각계 각층의 상호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사업을 장기적·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은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시장은 5년마다 부산광역시안전도시종합계획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시장은 시민의 안전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참여자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시장은 안전도시사업 추진 및 지역사회의 안전증진 등에 관하여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안전도시협

의회 및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시장은 국제적인 안전도시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시장은 안전도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 및 국제안전도시공인 관련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모든 시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신체 및 정

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3. “안전증진”이란 모든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써,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도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유·무형적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는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증진을 위하여 각계 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도시종합계획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안전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표와 방향
2. 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체험관 등 안전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개선 등 지원·장려에 관한 사항
5.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평가 및 지표설정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국내외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8.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의 구축)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제5호의 홍보 및 교육 참여자에게 안전 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안전도시협의회 설치)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추진의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여성가족정책관, 건설방재관, 복지건강국장, 교통국장, 소방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2.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

5.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

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협의회의 간사 등)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도시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3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건설방재관으로 하며,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여성정책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건강증진과장, 교통정책과장, 소방본부 특수구조단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를 구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그 밖에 안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交通安全분과, 학교안전분과, 가정·거주시설안전분과, 자살예방분과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에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국제적인 안전도시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손상자료 조사·분석 및 손상지표 산출
2. 시민의 안전의식 및 행태 등 안전사업요구도 조사
3. 지역사회 안전도 진단
4.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5. 국내외 안전도시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6. 그 밖에 사업 및 국제안전도시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연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안전도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센터 및 국제안전도시공인 관련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부산광역시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2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저소득층은 배움과 기술이 부족한 자로서 자활·자립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여건 마련이 중요함에 따라 자활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자활공동체가 생산한 재화 및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이 실시하는 자활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와 구·군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빈곤 문제 해결 및 지역 복지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자활근로사업단”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3. “자활공동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공동체를 말한다.
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함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이하 “구·군”이라 한다)와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3. 시 또는 구·군이 재산의 전부를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제4조(우선구매 등 지원)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공동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2. 관계법령에 따른 시·공유지 우선임대 및 임대료 지원
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
5.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
6.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7.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
8.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5조(자활사업 지원)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창업 지원 및 경영지도
4.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5.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6. 그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 시장은 생산·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5. 자활공동체의 운영지원
6.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보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비용 또는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지정 및 취소절차와 평가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6.12.28, 2008.2.29, 2010.1.18.> [제목개정 2006.12.28]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1.8.4>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6.12.28]

제18조(자활공동체)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 공동체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다. <개정 2006.12.28>

③ 보장기관은 공동체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

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6.12.28>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공동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5조의3(광역자활센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시·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및 알선
3.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6.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광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자활센터의 신청·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광주광역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1. 제정이유

가. 서구화된 식생활, 생활 습관병 증가, 과도한 음식물 쓰레기 발생 등 범국가적으로 체계적인 식생활교육 필요성 대두
 나.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을 규정(안 제4조)
 나.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심의사항 규정(안 제7조)

다.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위촉위원의 임기, 회의관련 사항 규정
(안 제8조)

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①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발전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가정, 학교, 지역 등 광주광역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안 된다.

③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에서는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 및 식생활 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식생활교육계획 수립)① 시장은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 식생활교육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자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식생활 교육의 평가)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식생활교육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식생활교육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 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자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7조(식생활교육 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식생활교육계획의 심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 경제산업국장, 복지건강국장, 환경생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산업건설위원회 1인, 교육위원회 1인)
2.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대표
4.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
5.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의료보건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소속 상임위원회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여,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주광역시 식생활교육 담당과장으로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④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선정한다.
1. 교육과정과 내용의 체계성
 2. 교육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3. 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1. 제정이유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 나.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 다. 지역특성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라. 전담부서 설치 및 지식재산정책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 마.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바. 발명제안 장려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사.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 아. 재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식재산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식재산 관련 주요 시책과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3.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성장산업과장이 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지식재산 창출 촉진) 시장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특허정보종합컨설팅 및 지역브랜드·디자인 가치제고 지원 사업

2.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3.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전시회 등의 개최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 포상
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기업의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시장은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여 창출된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기업이전을 위하여 우수 발명의 사업화 촉진 및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특성화사업 실시)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전담부서 설치 및 지식재산정책책임관 지정) ①시장은 지식재산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에 지식재산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을 지식재산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10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발명제안 장려) ①시장은 시민의 발명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시민발명제안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직무발명 제안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지식재산 시책을 효율적

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등과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3조(재원의 지원) 시장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법인·단체나 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식재산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공공연구기관과 사업자등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적극적인 활용 및 소속 연구자와 창작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제2조(민간의 정책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관련 연구기관, 법인·단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식재산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
 2. 시·도: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지식재산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2. 지식재산 관련 사업 평가
3. 지식재산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지식재산 관련 업무

5 전라남도 명예감사관 등의 운영 조례

1. 제정이유

- 가. 감사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 나. 위법·부당한 사항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례 발굴과 도정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명예감사관의 임무를 정함(안 제3조).
 - 각종 비리사항, 생활불편·불만사항, 모범사례, 건의사항 등 제보
 - 도지사의 요청에 의한 감사과정에 참여 등
- 나. 명예감사관의 자격 조건, 임기, 위촉 절차 등을 정함(안 제4조).
- 다. 명예감사관의 제보사항 처리 방법을 정함(안 제5조).
- 라. 민간전문감사관의 임무를 정함(안 제6조).

- 도산하 기관, 시군,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감사 등에 참여
 - 감사과정에서 자문,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등
- 마. 민간전문감사관의 자격 조건, 임기, 위촉 절차 등을 정함(안 제7조).
- 바. 민간전문감사관의 감사 참여 방법을 정함(안 제8조).
- 사.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의 위촉 해제 사항 및 비밀 준수 의무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전라남도 명예감사관 등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라남도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예감사관”이란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민간전문감사관”이란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예감사관의 임무) 전라남도 명예감사관(이하 “명예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 제보
2. 도민의 생활 불편, 불만사항 제보
3.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
4.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및 부패유발 제도·관행 시정 건의
5. 도지사의 요청에 의한 감사과정 참여
6.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례 발굴
7. 그 밖의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제4조(명예감사관의 위촉 등) ① 명예감사관은 시·군별로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여 100명 이내로 한다.

② 명예감사관은 도에 주소(「주민등록법」의 주소를 말한다)가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이후 퇴직한 사람
2. 각종 비정부기구(NGO)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직원 및 회원
3. 그 밖에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③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명예감사관의 제보사항 처리) ① 명예감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도지사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명예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명예감사관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기관(부서)에 넘겨 처리할 수 있다.

제6조(민간전문감사관의 임무) 전라남도 민간전문감사관(이하 “민간전문 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토목·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현장 감사 참여
2. 도 산하 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시·군 종합감사, 특정감사 참여
3. 도내 이해 집단별 갈등 부문에 대한 자문 역할 수행
4. 감사과정에서 온라인 등을 통한 자문 및 문제 해결
5. 그 밖에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제7조(민간전문감사관의 위촉 등) ① 민간전문감사관은 회계, 토목, 건축, 환경분야 등 전문가로 20명 이내를 위촉한다.

② 민간전문감사관은 도 또는 광주광역시에 주소 등 거주지를 두고 있거나 직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관련 전문분야에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관련 전문분야 대학교수
3. 비정부기구 단체의 임직원 및 회원
4. 유관기관의 연구위원
5. 도 단위 이상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

③ 민간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민간전문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민간전문감사관의 감사 참여) ① 민간전문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감사자문의 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민간전문감사관의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촉 해제) 도지사는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① 명예감사관 또는 민간전문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감사에 참여하는 명예감사관 또는 민간전문감사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명예감사관 또는 민간전문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

1. 제정 이유

도내 학부모 등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육관련 법률문제에 있어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 상담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경상북도교육청 관내에서 발생하는 교육 및 교육행정과 관련된 각종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변호사를 두고 필요사항을 규정.

나. 상담대상자의 범위(안 제2조) : 상담대상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경상북도 소재 유·초·중·고등학교(사립학교 포함) 교직원 및 학부모로 함.

다. 상담 내용(안 제3조)

- 1) 학교폭력, 교권 침해 및 교권남용 등 교육관련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 2) 교육행정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 3) 기타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과 관련된 법률 자문에 관한 사항

라. 상담방법(안 제4조) : 상담은 전화·서면 또는 온라인상 상담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

마. 상담변호사 위촉(안 제5조) : 상담변호사는 교육감이 위촉함.

바. 상담료(안 제6조) : 상담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사. 비밀누설금지(안 제7조) : 관계공무원 등이 상담의 접수 및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함.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관내에서 발생하는 교육 및 교육행정과 관련된 각종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변호사를 두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대상자의 범위) ① 상담대상자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공무원과 경상북도 소재 각급 유·초·중·고등학교 교직원(사립학교 포함) 및 학부모로 한다.

② 상담대상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3조(상담내용) 상담의 내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교육감 관장사무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교권침해 및 교권남용 등과 관련된 교육 관련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2. 교육행정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과 관련된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제4조(상담방법) ① 상담대상자가 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서면 또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성명·상담시간·연락처·상담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즉시 상담변호사에게 내용을 의뢰하고, 상담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③ 상담변호사는 답변을 위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1항의 매체를 이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

제5조(상담변호사 위촉) 상담변호사는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6조(수당) 상담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밀 누설 금지) 무료법률 상담 신청·접수 및 처리 관계공무원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무료법률 상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1. 2012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지 충남 아산 선정 55
2. 12월1일 인감대신 서명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58
3. 12.5월부터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국민연금실비론 시행·60
4. 노후 공공청사 녹색 건물로 리모델링 한다..... 66
5. 한식, 세계 유명 12개국 음식중 7번째..... 67
6. 고령자, 앞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된다 72
7. 새로운 지역 문화의 메카, 4대강 문화관 개관 75
8. 청각장애학생도 수업을 듣고 질문도 하며, 스마트하게 공부해요...79

1 『2013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지 충남 아산 선정

- 행정안전부는 『2013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가 충남 아산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올해 5월 9일부터 13일까지 대전 유성에서 열리는 『2012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앞두고, 차기 개최지를 선정한 이유는 내년도 행사준비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 온천대축제는 온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축제·관광자원 등과 연계하여 온천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 온천대축제 개최지로 선정된 지역은 관광객 증가와 관광 인프라 보강 등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축제 기간 동안 전국에 있는 온천 이용료가 할인되어 침체된 온천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2013년 10월 개최 예정인 온천대축제는 5일간의 일정으로 온천의료관광체험, 온정수신제, 온천의학연구소 운영, 온천발전 심포지움 등 다채로운 행사와 2013년 충남 예술제, 온양온천 문화예술제 등과 연계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한국온천협회·대한온천학회·한국관광공사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계획의 적정성·개최 여건·개최 의지 등을 심사해 “충남 아산시”를 최종 개최지로 선정한 것이다.
- 심보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통해 온천산업이 활성화되고 국내 온천 수준이 세계화·선진화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추진방향

- 2012년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를 통해 온천의 역사성을 재조명하는 축제로 승화시켜 옛 명성을 되살리고,
- 온천 이용 붐 조성과 온천 수요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

■ 축제기간 : 2012. 5. 9 ~ 5.13 (5일간)**■ 개최장소 : 유성온천 계룡스파텔 일원****■ 주 최 : 행정안전부, 대전광역시****■ 주 관 : 유성구, (특)한국온천협회****■ 후 원 : (사)대한온천학회, 한국관광공사, 국민일보****■ 주요내용**

- 공식행사 : 식전공연, 개 · 폐막식 행사
- 특별행사 : 온천수신제, 중국 서강구 예술단 공연, 온천가요제, 우리문화 국악한마당 등
- 학술행사 : 온천발전 심포지엄 등
- 체험행사 : 온천수 족욕체험 온천 테마탕 온천수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
- 할인이벤트 : 전국 온천이용업소 이용료 할인 등

참고 2

2007~2011 온천대축제 개최 현황

* '08년부터 전국온천주간행사 →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로 행사명 변경

■ 제1회 전국온천주간행사

- 일자/주개최지 : 2007.12.21~27/ 경북 울진군 백암·덕구 온천
 - 주최/주관 : 행안부, 경상북도/울진군, 한국온천협회
 - 주요내용
 - 전국 참여업소 이용료 할인(10~50%), 개막식(장관님 참석)
 - 온천발전 세미나, 미스온천 선발대회, 온천사진 전시회 등
- * 제1회 전국온천주간행사시 경북 울진군 백암·덕구온천 전년 동기 대비 관광객 8.1% 증가

■ 2008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 일자/주개최지 : 2008.10.10~16/ 강원 속초시 설악·척산 온천
 - 주최/주관 : 행안부, 강원도/속초시, 한국온천협회
 - 주요내용
 - 전국 참여업소 이용료 할인(10~50%)
 - 온천발전 대토론회, 온천수 체험전·사진전, '아름다운 우리온천' 발간
- * 전년 동기 대비 5만여명(추산) 관광객 증가

■ 2009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 일자/주개최지 : 2009.10.9~13/ 부산 동래
 - 주최/주관 : 행안부, 부산시/동래구, 한국온천협회
 - 주요내용
 - 전국 참여업소 이용료 할인(10~50%)
 - 온천발전 심포지움, 온천건강미인 선발대회, 온천가요제 등
- * 25만명 이상 참여로 전년동기 대비 20~30% 관광객 증가

■ 2010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 일자/주개최지 : 2010.10.6~10/ 충주 수안보
 - 주최/주관 : 행안부, 충청북도/충주시, 한국온천협회
 - 주요내용
 - 전국 참여업소 이용료 할인(10~50%)
 - 온천연찬회, 온천건강미인 선발대회, 온천가요제 등
- * 12만명 이상 참여로 전년동기 대비 50% 관광객 증가

■ 2011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

- 일자/주개최지 : 2011. 9.28 ~ 10. 2/ 경남 부곡온천 관광지 일원
 - 주최/주관 : 행안부, 경상남도/창녕군, 한국온천협회
 - 주요내용
 - 전국 참여업소 이용료 할인(10~50%)
 - 전국 온천가요제, 온천 마당극, 부곡온천하프마라톤 대회, 한국 온천사진 전시회 등
- * 전년 동기 대비 15만여명(추산) 관광객 증가

※2012 대한민국온천대축제 : '12.5.9~5.13(5일간, 대전 유성온천 계룡스파텔 일원)

2 12월 1일부터 인감대신 서명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현행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시행을 위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하고 4월 24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금번 제정안은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2012.2.1 제정·공포, 2012.12.1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서명·신청에 사용하는 성명은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원부, 국내거소신고원부 등 공적장부에 등재된 성명으로 서명 및 신청을 하도록 했다.
- 그리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사무소 등의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구술로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무인을 대조하여 신분확인을 한 후 발급하도록 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

- ① 민원인이 읍·면·동 등 방문 → ② 신분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 →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읍·면·동장 등) →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 또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특수 용지를 사용하고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를 이용하여 서명입력을 하며, 본인의 성명을 전부기재하지 않거나 성명과 다르게 서명한 경우는 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온라인상 이용 가능한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는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발급하도록 하고, 확인서의 제출이 가능한 공공기관과 수요기관의 용도의 재사용 금지 등을 규정하였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활용 절차 》

- ①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면동 등 방문) → ② 민원인이 민원24 접속 → ③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 ⑤ 전자서명 → ⑥ 확인서 발급 → ⑦ 발급증 출력 후 제출 → ⑧ 수요기관은 발급시스템에서 확인서 확인 후 민원처리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이용승인 신청시 무인을 날인한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확인 수단인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발급시스템 이용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였다.

-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2013년 8월 2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공공기관, 법원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였다.

- 또한, 수수료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통당 600원으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국민들께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국민 편의를 도모하면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3 12.5월부터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국민연금실버론』 시행

□ 보건복지부는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등의 협조 하에 ‘12년 5월 2일부터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이하, “국민연금실버론”)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저리로 빌려주어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국민연금 수급자 및 급여 현황(‘12. 3월 현재) : 3,053천명(월 평균 286천원)

○ 금년 5월부터 시작하여 2014년 12월까지 3년간 매년 300억 원씩 총 90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 『국민연금실버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대부최고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500만원 한도)에서 실 소요금액까지 받을 수 있으며,

○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12년 2/4분기 3.56%)를 적용하고, 최고 5년동안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토록 하였다.

※ 월 20만원을 받는 연금수급자가 의료비 500만원을 대부신청하면, 최대 48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고, 그 후 첫번째 달의 월상환금은 10.4만원(5년상환)

- 대부금 상환일은 높은 이자 부담을 막기 위해 급여지급일과 일치시키고 자동이체(약정시 의무조항 반영)를 통해 상환하게 된다.

※ 2회 연속으로 미상환시, 연금급여에서 월상환금 원천징수

- 자금의 용도는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및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경우로 한정된다.

□ 대부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141개소)에서 받으며, 연금공단은 신청접수와 더불어 노후설계서비스 등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 수급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사 외에도 가까운 우체국(2,800여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78개소)에 방문하면 간이신청접수가 가능하다.

-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참조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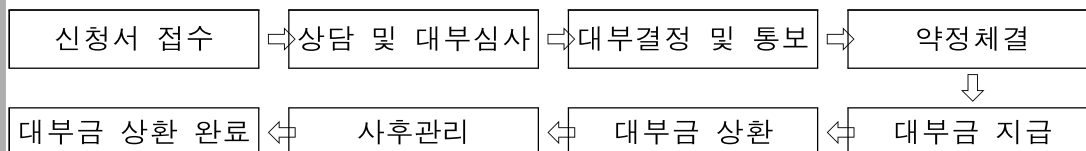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렵고 힘들 때 보다 낮은 이자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국민연금실버론」이 연금수급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국민연금실버론 개요

2. 예상 Q & A

- (대부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500만원 한도)
- (지원용도)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 생활안정 자금
- (이자율) 5년만기 국고채권 수익률로 하되, 변동금리 적용
 - 연체이자율 : 대부이자율의 2배
- (상환조건)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사업규모) 총 3년간 900억원, 18,000명(매년 300억원, 6,000명)
- (채권보전방안)
 - 급여당일 대부금 상환 : 높은 이자 부담을 막기 위해 급여지급일과 대부금 상환일을 일치시켜 자동이체(약정시 의무조항 반영)를 통해 대부금 상환
 - 수수료 공제 : 사망 등 미변제 건을 대비해 대손충당금 명목의 수수료(연 0.5%)를 선 공제하되, 70세 이상 수급자 또는 유족연금 등 수급자는 연대보증인 입보를 전제로 대부
 - * 1년간 사업 실시 후 필요시 채권 보전 방안 등 조정 가능
- (사업운영) 신청·접수, 지급결정, 사후관리 등의 모든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수행

<대부업무 처리절차>



- (사업기간) 2012. 5. ~ 2014. 12.(3년간)

Q1. 과거 국민연금공단 대부사업 실적이 저조한 데도 추진한 계기는?

-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대출상품이 출시되나, 60세 이상 고령자는 신용보증 및 용도 제한 등으로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을 감안
 - 긴급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대부해주어 연금수급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지난해 1월 연금수급자 60세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실 수요조사 결과 55.2%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31.3%는 이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
 - 향후 사업 중간점검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

Q2. 같은 수급자이면서 만 60세 미만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 만 60세미만인 자는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중자 비율이 높고, 시중금융권과 다른 서민금융제도의 이용가능성이 높음
 - '11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60세이상 고령자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67.4%에 달함

Q3. 대부금의 용도를 제한한 이유는?

- 금융권으로부터 소외된 고령의 수급자에게 갑자기 닥친 어려움으로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저리로 대부함으로써 **노후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지난해 1월 실 수요조사 결과 긴급의료비(57.5%), 전월세자금(4.8%) 등 긴급한 용도로 이용하겠다고 응답함
- 향후 사업추진을 통해 실적 등을 반영하여 필요시 용도를 조정해 나갈 계획임

Q4. 대부금을 최고 500만원까지 한정한 이유는?

- 노후의 기초소득을 보장하는 연금급여의 취지와 대부자의 연금지급월액의 1/2 범위내에서 대부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상환부담을 고려하여 한도를 정하게 되었음**
 - 한정된 예산(연 300억원) 범위내에서 보다 많은 연금수급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할 필요
 - 또한, 지난해 1월 실 수요조사 결과 응답자의 73.5%가 500만원 내외의 대부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됨
- ◇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를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국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명칭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 납세자가 지방세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등에서 현금 또는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쉽게 조회·납부하고, 즉시 납부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납부시스템으로 향후 각종 공과금까지 확대할 예정임

-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1월 9일부터 1월 31일까지 새로운 지방세 납부시스템의 명칭을 국민 공모를 통해, 총 2,762명으로부터 3,590개의 명칭을 제안 받았다.
- 이를 홍보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후보 명칭 6개를 선정했다.
 - 후보로 선정된 명칭은 “간단e납부, 바로원(Baroone), 바로빌(Barobill), 365공과금, 납부OK, 공과금e납부”이다.
- ◇ 선호도 조사 기간은 3월 5일부터 3월 23일까지이며, 참여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의 「열린마당 > 선호도 조사」 메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는 3월말에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 행안부는 적극적인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해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온 명칭에 참여한 국민들 중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조사에서 최종 결정된 명칭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새로운 지방세 납부시스템에 대한 국민 인지도 및 이용률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들의 지방세 납부편의성이 증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4] 노후 공공청사 녹색건물로 리모델링 한다

- 조달청(청장 최규연)이 오래된 공공청사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 리모델링’에 나선다.
 - 그동안 공공청사 리모델링은 노후 된 부분을 단순히 교체·보수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건물의 성능을 개선하는 녹색 리모델링과는 거리가 있었다.
 - 이는 녹색 리모델링의 개념과 예산 편성 기준, 발주 절차 등 공공기관이 사업 추진에 활용할 기준이 명확치 않았기 때문이다.
 - 조달청은 ‘녹색 리모델링 발주 가이드라인’을 마련, 4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조달청은 이 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에 보급해 녹색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 공공기관이 맞춤형 서비스를 요청해 올 경우 예산 편성부터 설계, 시공관리까지의 리모델링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는 조달청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건설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건설사업을 집행하는 서비스
-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녹색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 꼭 필요한 사업 범위 설정 방법, 공사비 책정 방법, 사업 수행 절차 등을 규정하고,

- 에너지 효율 등급 2등급, 친환경 건축 인증 우수등급에 준하는 건물로 성능이 개선될 수 있게 하는 구체적 설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기밀성 창호, LED 조명 등을 의무 채용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의 설계 기준을 따를 경우 통상적인 리모델링보다 10~15% 정도의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그 동안 신축 건물의 에너지 효율은 크게 개선됐지만 기존 건축물의 성능 개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면서,
- “선진국처럼 리모델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가이드라인은 녹색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5] 한식, 세계 유명 12개국 음식중 7번째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난 3년간 추진해온 한식세계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현 상황을 진단하며,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한식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한식세계화지수를 개발하여 한식세계화 추진단 분과위 회의 시 발표하였다.
- 한식세계화지수는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문헌연구와 전문가 심층 면접을 통해 5개 분야 39속성을 발굴하고 통계적인 유의성 검증을 거쳐 완성하였다.

모형	목 적
측정 모형	요리 경쟁력을 구성하는 차원 및 각 차원의 하위속성 구조를 판별/정의
Scoring 모형	차원 및 속성의 중요도(가중치) 추정
Priority 모형	경쟁자 대비 경쟁력을 고려하여 차원/속성에 걸친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차원 및 속성의 판별

* 개발된 모형은 한식 뿐만 아니라 타 경쟁요리(예:이탈리안)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함

* 5개분야 비교항목 : 음식, 이미지, 가격, 인적서비스, 식당

* 39개 항목 : 음식(맛, 접시에 담긴 모양, 먹음직스러워 보임, 냄새 등 9개), 이미지(대중적, 고급스러움, 창의적, 특별함, 웰빙 등 5개), 가격(음식 품질/서비스 대비 가격의 적정성), 식당(식재료, 규모, 서비스, 분위기, 지리적 접근성, 쾌적·청결, 외관, 전망 등 15개), 인적서비스(친절, 음식에 대한 전문지식, 서비스 숙련도/신속성/정확성 등 9개)

□ 한식세계화지수 산출을 위해 북미·유럽·아시아 총 5개국 600여명에 대해 인터넷 설문을 실시한 결과, 한식은 73.2점으로 세계 12개국 음식 중 7번째 수준이며, 세계 5대 음식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음식과 이미지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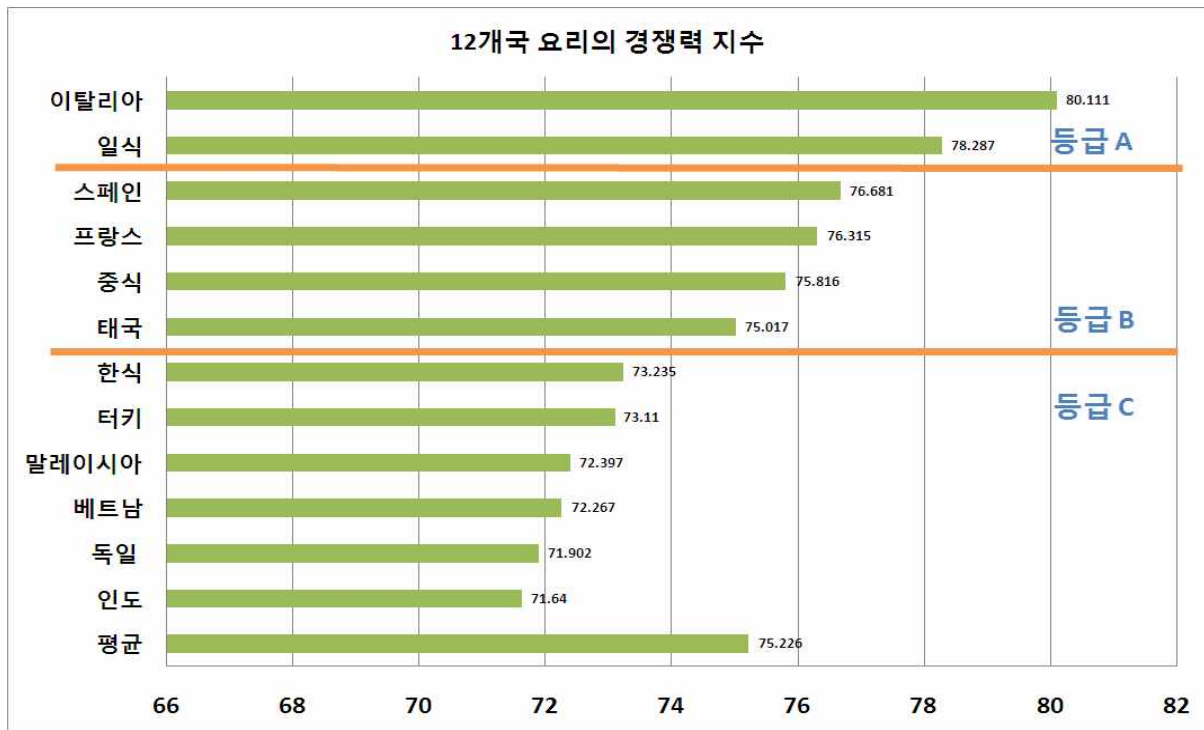
* 이태리(80.1점), 일본(78.3), 스페인(76.7), 프랑스(76.3), 중국(75.8), 태국(75.0), 한국(73.2), 터키(73.1), 말레이시아(72.4), 베트남(72.3), 독일(71.9), 인도(71.6) 순

○ 조사분야별로 우선적으로 개선될 사항으로 ①음식(맛 접시에 담긴 모양) ②이미지(대중적, 고급스러움, 창의적) ③가격(가격대비 품질 제고) ④식당(식재료, 규모, 서비스, 분위기, 지리적 접근성, 쾌적·청결) ⑤인적서비스(친절, 복장과 외모, 정확한 서비스)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12.4.18일 열린 한식세계화 추진단 분과위에서는 한식 성과지수의 결과를 보고 받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논의하였으며,
- 서대원 민간 추진단장은 “이탈리아 또는 일본음식 추월 같은 과제를 성급히 목표로 삼는 것보다는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하위목표 즉, 태국 또는 중국음식 추월을 목표로 하여 한식 세계화 전략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다보면 머지않아 ‘세계 5대 음식 진입’이라는 한식세계화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고 밝혔다.
- 아울러, 한식세계화 추진단은 한식세계화를 위한 민·관 합동 정책 자문기구인 만큼 분과위를 활성화하여 한식이 세계화가 될 수 있도록 정책조언과 개선방안 도출에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 농림수산물식품부 관계자는 한식 성과지수에서 나타난 개선 항목과 한식세계화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반영하여 한식이 17년까지 세계 5대 음식으로 진입하도록 '09년에 수립된 한식세계화 추진전략을 현실에 맞게 보완·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

12개 요리별 경쟁력 점수(C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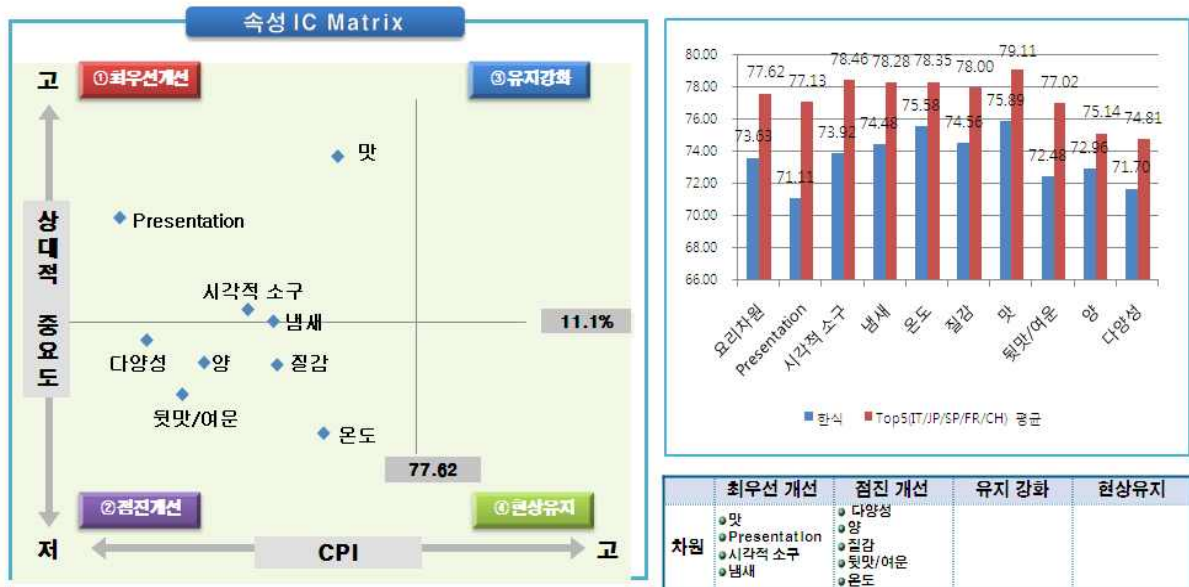


한식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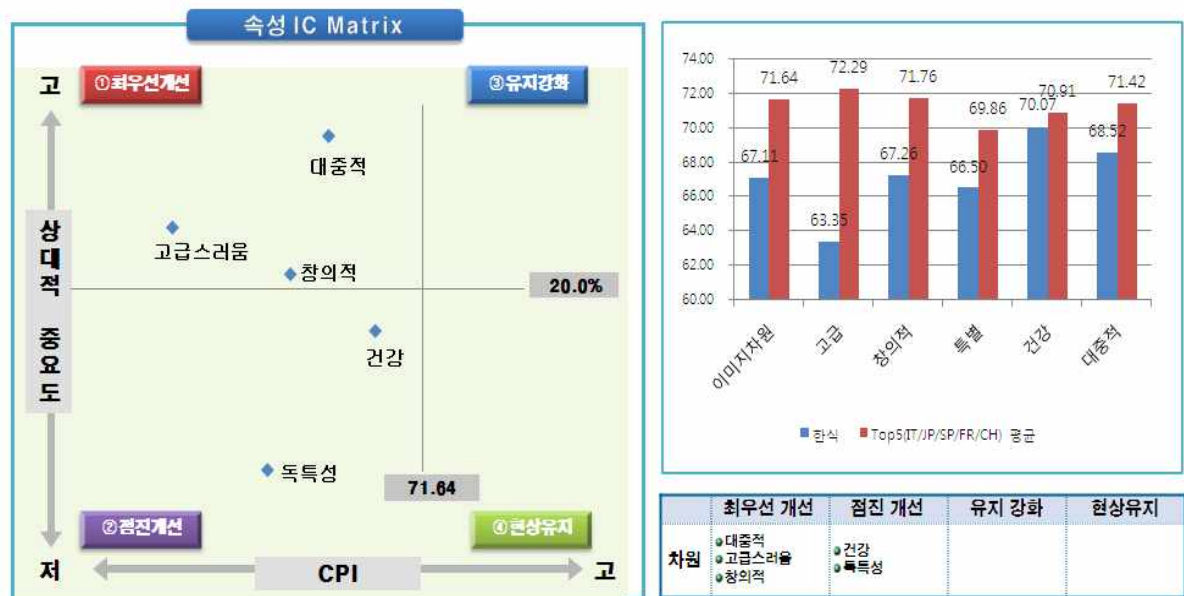
1) 5개 분야 중요도 및 경쟁력 점수



2) '음식' 분야의 중요도와 경쟁력 점수



3) '이미지' 분야의 중요도와 경쟁력 점수



6 고령자, 앞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된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대기업의 퇴직·이직 예정자 대상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등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은 인구 및 생산인력 고령화에 따른 기업의 생산인력 부족과 숙련기술 단절을 예방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궤적을 함께 한 베이비부머 등 중·고령인력이 나이에 관계없이 의욕과 능력에 따라 '주된 일자리에서 더 많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일할 의욕이 있다면 제2·제3의 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우리사회가 저출산·고령화의 늪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11.6.10, 베이비붐세대 등 고용촉진을 위한 노사정 합의 취지도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장년의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 점진적 퇴직 제도를 더욱 강화함.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장년(50세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

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등이 없는 경우 허용하여야 하며, 허용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지 못함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해당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비례보호원칙)에 따라 결정되고,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주당 12시간 이내에서 허용되며, 해당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분쟁예방을 위해 근로시간·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함

- ② 근로시간 단축 청구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주(생산인력)와 근로자(임금감소)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청년 등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이 연장되는 근로자에게는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함.
- ③ 퇴직 또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장년의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노력을 강화함. 퇴(이)직일 이전 1개월 이상 구인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창업정보 제공 등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한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해 장려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④ 퇴직한 장년 가운데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

거나 젊은 세대와 나누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장년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근거를 명시함

⑤ 사회통념 및 국민인식에 부합하도록 고령자·준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함

- 고령자(55세이상) 및 준고령자(50세이상~54세이하) 연령기준이 '91년 법제정 이후 변경되지 않아 기대수명('09년 80.3세, OECD 79.5세) 및 노동시장 실제 은퇴연령(68세 전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들 또한 고령자 및 준고령자 연령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는 등 고령자의 고용안정에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인식 조사결과와 부합하도록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고령자, 준고령자를 '장년'으로 명칭을 변경하되, 고령자의 노동시장 실제 은퇴연령을 감안하여 65세 이상인 사람이라도 취업하고 있거나 구직의사가 있는 한 장년으로 간주하여 동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 법률 명칭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장년의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장년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인생 2라운드를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장년의 근로자가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입
법예고안에 대해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4.26~6.4)한 후 정부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
출할 계획이다.

7 새로운 지역 문화의 메카, 4대강 문화관 개관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본부장 심명
필)와 K-water(사장 김건호)는 4대강 사업지역에 새로운 강
문화 시대의 문화명소로 자리 잡을 4대강문화관을 건립하고,
4월29일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한강문화관 개관행사를 시작으
로 4대강문화관을 순차적으로 개관한다.

※ 4대강문화관 개관행사 일정

- 강천보 한강문화관 4.29(일), 백제보 금강문화관 5.5(토),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5.12(토), 을숙도 낙동강문화관 5.20(일)

-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와 K-water는 4대강문화관에 문화예술
과 레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의 장', 4대강의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과
즐거움의 장'을 컨셉으로 지역의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고 지
역발전과 함께 지역 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 문화관은 “홍보존”, “문화예술존”, “지역특화존”, “희망나눔

존”, “주민친화존”으로 구성하여

- “홍보존”은 차은택 감독의 홍보 영상* 등 4대강사업의 내용과 사업 후 변화된 모습 소개, 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중요성을 전달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공통작품 : 물의 순환, 강과 문명, 4대강의 Before & After, 16개의 명품보

- “희망나눔존”은 관람객들이 자신의 소망을 담아 작품전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문화예술존”은 강과 물을 테마로 줄리우스 포프, 도쿠진 요시오카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의 문화예술작품이 설치되어 있고

- “지역특화존”은 각 지역별 강문화와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 가치를 들려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마지막으로 “주민특화존”은 주민회의, 세미나, 문화강좌, 영상관람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홀과 브리핑룸으로 물체험 과학교실 · 귀농귀촌교실 · 문화예술교실을 개설하고, 웰빙 소물리에 와인특강 교실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 아울러, 4대강문화관 야외공간에서는 어린이 스포츠 교실과 오토캠핑장이 제공되며, 축구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 대여는 물론 각종 단체의 야외공연도 볼 수 있어 지역주민과 방문고객의 즐거움을 북돋우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처음으로 개관 행사를 갖는 **한강문화관**은 지하1층·지상3층에 전망대를 갖춘 건축연면적 3,576㎡의 대형 건축물로 강변에 학이 내려앉은 형상을 띄고 있으며, “**문화예술존**”에는 물방울로 글씨를 만들어 소통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줄리어스 포프**’의 작품 ‘**Bit Fall**’이 전시되어 있다.
- 또한, 이번에 개관하는 4곳의 4대강문화관 외에 4대강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문화관(강정고령보)**을 오는 9월에 준공할 예정이어서 강 문화의 넉넉한 여유를 즐길 곳이 늘어난다.
-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와 K-water는 앞으로 4대강문화관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새로운 강 문화**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며, 주말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야외 예식장 운영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에 기여할 계획이다.

붙임 : 4대강 문화관 건립 의미 및 현황 (참고자료)

1. 문화관 건립 의미

- ☐ (의의) 4대강 사업기념과 새로운 江문화 창조 거점역할 수행
- ☐ (목적) 4대강 문화관을 대한민국 지역문화 메카로 정립하고 다양한문화예술 공유기회 제공과 소통, 화합, 참여의 장으로 승화

2. 문화관 건립 현황

- ☐ (총괄) 총 5개소 중 4개소 완료 (강천보, 승촌보, 백제보, 을숙도)
* 대표문화관(강정고령) 은 9월 준공 예정
- ☐ (건축) 문화관 규모(m²) 및 공정율

문화관	위 치	문 화 관 규 모 (m²)		공 정 율	비 고
		연 면 적	전 시 면 적		
계		15,506	7,808	-	-
대 표	강정고령보	3,688	2,216	14%	9월 준공
한 강	강천보	3,576	1,464	100%	준공 완료
낙동강	을숙도	2,094	1,369	100%	
금 강	백제보	2,722	1,366	100%	
영산강	승촌보	3,426	1,393	100%	



한강문화관(강천보)



낙동강문화관(을숙도)



금강문화관(백제보)



영산강문화관(승촌보)

8 청각장애학생도 수업을 듣고 질문도 하며 스마트하게 공부해요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장애 또는 건강의 문제로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건강장애학생과 순회교육학생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추진해 오던 장애학생 스마트러닝을 2012년에도 지원 대상 및 기관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 우선 2012년 4월, 서울의 국사봉중학교 특수학급에 청각장애학생 스마트교실 구축을 시작으로 장애 유형별 스마트교실 운영을 실시한다.

□ 서울의 국사봉중학교 특수학급에 설치된 장애학생 스마트교실은 일반학교에 다니는 청각장애학생을 위하여 스마트기기를 제공하여 청각장애학생도 통합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청각장애학생에게 지원되는 스마트기기는 교사의 수업과 친구와의 대화를 원격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실시간 수화통역 또는 문자통역을 제공받고,

※ 원격교육지원센터 :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된 기구로 청각장애학생이 수업장면을 스마트기기를 통해 센터에 전달하면, 센터의 수화통역사 또는 속기사가 실시간으로 수업 내용을 수화 혹은 텍스트로 장애학생의 스마트기기로 전송하는 역할 담당

- 학생이 질문이나 대답을 스마트기기에 입력하면, 이를 스피커를 통해 교사나 친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이는 일반학교에서 의사소통의 장애로 학업 및 급우와의 교류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학생의 교육 불편을 해소하고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학생 스마트교실에는 스마트기기 뿐만 아니라 서책형 교과서 등 기존 인쇄매체의 장점도 융합하여 인쇄물과 디지털콘텐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 교실에서 학생이 인쇄된 수업자료에 특수한 필기도구로 문제를 풀거나 기록한 내용이 교실의 모니터 또는 태블릿PC에 표시되어 교사나 급우와도 학습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며,
 - 학생별 학습결과물의 누가기록이 가능하고 담임이 바뀌어도 누가기록분석을 통해 학습수준에 맞는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지원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지원 계획(‘11.7)」과 교과부, 삼성전자 및 SK텔레콤이 참여한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10.11)」에 따라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 2011년 12월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 후, 장애학생 및 지원교사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보급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극복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하여 장애학생 스마트교실 시범 운영 후, 지원 대상을 2,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선거 관련 정보

4.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12. 3. 15까지	목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4. 13까지	금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4. 23부터	월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일전 240일부터	법§60의2①
7. 22부터 10. 20까지	일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5,6 규§136의4,5
9. 20까지	목	각급선거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라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9. 20부터 12. 19까지	목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9. 20까지	목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53①
10. 20부터 12. 19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10. 31부터 11. 9까지	수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9 규§136의8,9
11. 19에	월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11. 21부터 11. 25까지	수일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8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11. 25부터 11. 26까지	일월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11. 27	화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	법§33③
11. 29까지	목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④
12. 2까지	일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책자형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법§65⑤, 규§30④
12. 5까지	수	책자형선거공보 발송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5⑤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12. 5부터 12. 10까지	수 월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8시~오후5시)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 까지 기간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⑥ 규§136의15
12. 6까지	목	전단형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법§65⑤, 규§30④
12. 10까지	월	부재자 투표용지(책자형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발송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154①⑤ 규§77
12. 10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9일에	법§44①
12. 12까지	수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⑤, §153①② 규§76
12. 13부터 12. 14까지	목 금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 §155②
12. 19	수	투 표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13 2 27까지	수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70일 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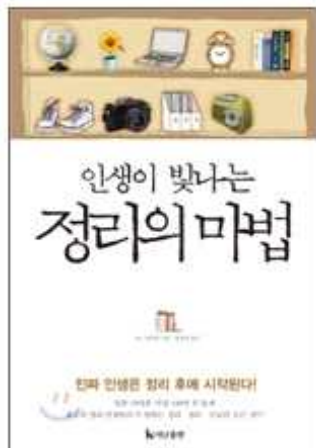
5. 재외선거 주요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11. 10. 14부터 ‘13. 1. 18까지	금 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국회의원선거일 전 180일부터 대통령선거일 후 30일까지	법§218①⑨ 규§136의2
‘12. 7. 21까지	토	재외투표용지 작성·교부 방법 결정	국외부재자신고 등 기간개시일 전일까지	법§218의18③ 규§136의17①
‘12. 7. 22부터 ‘12. 10. 20까지	일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5,6 규§136의4,5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토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송부	공관명부 등 작성 즉시	법§218의7 규§136의6
10. 31부터 11. 9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9 규§136의8,9
11. 10부터 11. 14까지	토 수	재외선거인명부 등 열람 및 이의신청 (불복신청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 까지)	선거일 전 39일부터 35일까지	법 § 2 1 8 의 10,11
11. 15부터 11. 18까지	목 일	재외선거인명부 등 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선거일 전 34일부터 31일까지	법§218의11③ 규§136의10②
11. 19	월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 전 30일	법§218의13①
11. 21부터 11. 25까지	수 일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	선거일 전 28일부터 5일 이내	법§37,38
11. 25부터 11. 26까지	일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6시)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월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원고 제출		법§218의14④ 규§136의13
11. 29까지	목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 공고	선거일 전 20일까지	법§218의17③ ④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12. 2까지	일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신고	선거일전 17일까지	법§218의20②
12. 5부터 12. 10까지	수 월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8시~오후5시)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이내	법§218의17① 규§136의15
		재외투표 등 회송	재외투표기간 만료일후 지체없이	법§218의21② 규§136의23
12. 13부터 12. 14까지	목 금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 법§218의16③
12. 19	수	투 표 (오전6시~오후6시)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선거일	법§155 법§176 규§95의2
		공관 개표(사유발생시)	중앙위원회가 정한 일시	법§218의24 규§136의25

※ 본 재외선거사무 일정표는 법 제218조의18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소에서 재외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의 관련 절차사무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외투표용지 작성·교부 방식 변경시 별도 일정표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행복한책읽기



- ☐ 도서명 : 정리의 마법
- ☐ 저자명 : 곤도마리에
- ☐ 출판사 : 더난
- ☐ 출판년 : 2011.4.13
- ☐ 페이지 : 256쪽
- ☐ 가 격 : 13,000원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 어플, 책상 위 불필요한 서류, 생활 속 구석구석 들어가는 잡동사니들...

당신이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일본 아마존 서점 100만 부 돌파, 최고의 정리 컨설턴트가 말하는 정리의 힘!

단순히 청소를 하지 않아서 주변이 어지러운 것은 아니다. 어지러운 주위 환경은 당신의 인생 앞에 놓인 장애물과도 같다.

이와 마찬가지로 눈앞에 놓인 물건을 무조건 가리고 숨기는 것보다는 '물건과 나와의 감정적인 관계를 설정해서 불필요한 물건은 과감하게 버리고, 남긴 물건은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리는 매일매일, 평생 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일본 최고의 정리 컨설턴트 곤도 마리에에는 “정리가 잘되면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회사와 가정에서 성공과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고 말하며 정리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정리 후에는 우리의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인생까지 달라질 수 있다. 바로 정리가 가진 힘 덕분이다.

방과 책상 정리는 한 번에 빨리 끝내고 나를 정말로 두근거리게 하는 것에 시간을 들이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진심으로 설레는 사명을 발견하는 데 정리는 분명 도움이 된다. 것처럼 진짜 인생은 정리 후에 시작된다.

지금까지 당신이 알던 정리 정돈법은 모두 잊어라
한 번에, 단기간에, 완벽하게 정리하는 곤마리 식 ‘감정 정리술’
아무리 정리해도 1주일 후에는 방이 원래대로 뒤죽박죽... 정리 리바운드로 골치 아픈 경험이 있는가? 곤마리 식의 ‘정리 수납법’은 정리 리바운드(정리 후 다시 지저분해져서 정리를 매번 계속해야 하는 상황)로 계속 고민하던 저자가 15세부터 연구하던 정리 정돈 방법의 정수로서, ‘한 번 정리하면 두 번 다시 어지르지 않는 정리법’을 말한다.

이 책은 단순한 공간 정리법이나 수납법을 다루고 있지 않다. 정리 정돈 기술의 차원을 넘어 ‘설렘’이라는 감정을 기반으로 물건과 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곤마리가 말하는 정리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필요 없는 물건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과 적절한 위치에 물건을 배치하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정리를 못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건에 감정이입해 잘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추억이 깃든 물건이라도 꼭 필요한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리의 비결은 정리 습관을 조금씩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정리하는 것으로 극적으로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다. ‘섀렘’을 기준으로 남길 물건을 선택하고 한 번에, 짧은 기간에, 완벽하게 정리하라. 당신이 평생 해야 하는 것은 ‘버릴지 남길지의 판단’과 ‘남긴 물건을 소중히 사용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체중이 빠지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고, 영업 실적이 올라간다고? 진짜 인생은 정리 후에 시작된다!

책의 저자인 곤도 마리에에는 정리 레슨을 마치고 나서 수강생들에게 많은 감사 메일을 받았다고 한다. 그 메일에는 단순히 생활 공간이 깨끗해져서 감사하다는 내용뿐 아니라 “방을 정리했더니 저절로 다이어트가 됐다.” “화장품을 정리했더니 피부가 좋아졌다.” “영업 실적이 올라갔다.” “만나고 싶었던 사람에게 연락이 왔다.” 등등 인생에서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는 곤마리 식 정리의 효과

1.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선택의 역사를 정확히 말해준다. 정리는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자신에 대한 ‘재고 조사’다.

- K는 원래 규모가 큰 IT 기업에 근무했는데, 정리를 통해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발견했다. 정리를 마친 K는 설레는 물건만 남아 있는 책장에 사회복지 관련서가 유독 많이 꽂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사회인이 되어 구입한 영어 교재와 비서 검정 등의 자격증 책은 전부 없어졌는데, 중학생 때 샀던 복지 관련 책들은 남아 있었던 것이다.

K그 일을 계기로, K는 중학생 때부터 사회인이 되기 전까지 계속했던 베이비시터 봉사를 떠올렸다고 한다. ‘아이를 낳은 여성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품었던 정열을 깨닫게 된 K는 정리 레슨을 졸업하고, 1년간 독립을 위해 관련 분야의 공부와 준비를 계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회사를 그만두고, 베이비시터 사업을 시작했다. 지금은 많은 고객으로부터 힘을 얻어 매일 즐겁게 일하고 있다.

2. 판단력과 결단력이 높아져 자신감이 상승한다

정리 과정에서 물건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설레는지 어떤지 자문자답해 남길지 버릴지 판단하는 것을 수백, 수천 번 반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판단력이 키워진다.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자신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경험의 연속이기 때문에 물건을 버리는 것으로 결단력을 높일 수 있으며, 더불어 자신감도 상승한다.

- S씨는 자신은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레슨을 통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레슨을 통해 버리는 것에 쾌감을 느껴 2만 5,000엔이나 하는 다도 도구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게 되었고, 재활용 쓰레기 수거 일을 기다리게 되었다고 한다. S씨는 “지금까지 내게 자신이 없어서 ‘변해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대로의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정리를 하면서 매사를 판단할 때 나름 명확한 기준이 생겨서 자신감이 상승했어요.”라고 말한다.

3. 신체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다

정리를 하면 방의 공기가 깨끗해진다. 물건이 적어지면, 방에 쌓이는 먼지는 줄고 청소하는 빈도는 늘어난다. 바닥이 보이기 때문에 먼지가 쌓이면 눈에 띄어서 신경이 쓰이게 되고 그래서 자주 청소를 돌리고 바닥을 닦게 된다. 방의 공기가 깨끗해지면 피부에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청소를 하면

다이어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하루에 쓰레기봉투 40장 분량의 많은 물건을 버리거나 단번에 물건을 버린 A씨는 설사를 하고 피부에 뽀루지가 나서 마치 단식을 할 때처럼 몸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몸에 쌓였던 독소가 단번에 빠져나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틀쯤 지나니 원래대로 돌아오거나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도 좋아졌다고 한다. 어떤 고객은 10년 정도 방치했던 벽장과 창고에서 쓰레기봉투 100장 분량의 물건을 버린 후, 시원하게 설사를 하고 나서 놀랄 정도로 몸이 가벼워졌다고 한다.

이처럼 물건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면 이후의 선택에 망설임이 사라진다. 망설이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길에 열정을 쏟을 수 있다면 보다 큰일을 이룰 수 있다. 자신에게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갖고 있는 물건 하나하나가 전부 ‘너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너무나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레지 않는 물건을 버리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정리 외엔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정리의 마법이다. 우리는 정리를 통해 ‘과거를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더불어 행복해질 수도 있다.

□ 저자소개 《곤도마리에》

일본 최고의 정리 컨설턴트로, NHK 오하요우 일본, TBS 왕자의 브런치 등의 방송 매체를 통해 정리 정돈법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저자는 유치원을 다닐 무렵부터 ‘정리’에 푹 빠져 지낸 자타공인 ‘정리 마니아’다. 어린 시절부터 여성 잡지에 나오는 정리 정돈법을 직접 실행하면서 잘못 알고 있던 정리 상식들을 깨닫고, 자신만의 정리법을 찾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주변을 정리하면서 자신이 직접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일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자신감도 높아졌다고 말한다. 더불어 수많은 고객들의 정리 컨설팅을 해주면서 ‘정리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자신하게 되었다. 현재 그녀는 홈페이지와 ‘소녀의 정리 수납 레슨’ ‘사장의 정리 수납 레슨’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정리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다.

MEMO

의 정 정 보

❖ 발 행 일 : 2012년 4월 26일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 (042) 606-5021 / 팩 스 (042) 606-5029